

의 정 정 보

2010 - 12호 12. 10.

1. 최근 주요 제·개정 법령	1
2.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13
3.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 관련 동향	69
<참고1> : 201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87
<참고2> : 행복한 책 읽기	97

▣ 최근 주요 제·개정 법령

1.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	2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6
3. 유통산업발전법	—	8
4.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	9
5.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	10

최근 주요 제·개정 법령

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0397호, 2010.10. 1, 제정】

1. 제정이유

현재의 지방행정체제는 농경시대였던 100여 년 전에 정해진 것으로서 그 동안의 교통·통신·인터넷 등의 발전에 따른 주민의 생활·문화·경제권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여 주민 불편을 심화시키고, 다단계 행정계층구조로 인한 행정혼선과 예산·인력·시간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 역량과 격차를 심화시키는 등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반영시키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역량을 대폭 확충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비용·저효율·다층구조의 현행 지방행정체제의 문제점을 전면 개선함으로써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며,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정착을 도모하고, 세계화 추세에 맞는 지역단위 경쟁력 확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의 설치(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를 두고, 개편추진위원회는

2012년 6월 30일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201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도록 함.

나. 특별시 및 광역시의 개편(안 제12조 및 제13조)

특별시 및 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로 존치하되, 관할구역 안의 구 중에서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구는 적정 규모로 통합하도록 하고, 개편추진위원회는 구와 군의 지위, 기능 등에 관한 개편방안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다.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안 제14조)

도는 지방자치단체로 존치하되, 개편추진위원회는 시·군의 통합 등과 관련하여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등을 포함한 도의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2014년 동시지방선거일 1년 전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

라. 시·군·구의 개편(안 제15조)

국가는 시·군·구의 인구, 지리적 여건, 생활·경제권, 발전가능성, 지역의 특수성, 역사·문화적 동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합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간 통합을 지원하도록 하고, 시·군·구의 통합에 있어서는 시·도 및 시·군·구 관할구역의 경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마. 시·군·구의 통합절차(안 제17조)

개편추진위원회는 시·군·구의 통합을 위한 기준을 작성·공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또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은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통합을 개편추진위원회에 건

의할 수 있도록 하며, 개편추진위원회는 시·군·구 통합방안을 마련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바.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설치(안 제18조)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통합 대상인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칭, 청사 소재지 등 통합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사. 주민자치회의 설치(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 내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

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안 제23조부터 제32조까지)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이익배제,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 통합비용 및 절감예산 지원, 특정 지역 개발을 위한 지구·지역 등의 우선 지정, 종전 보통교부세의 4년간 보장, 교부세 외의 추가적인 재정지원 등의 특례를 부여함.

자. 대도시에 대한 사무특례(안 제33조)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및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재정운영 및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인 1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보도록 함.

차. 대도시에 대한 재정특례(안 제36조)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및 10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보전금과 별도로 해당 시에서 징수하는 도세 중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을 추가로 확보하여 해당 시에 직접 교부하도록 함.

카.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양 특례(안 제39조)

특별지방행정기관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지방자치 단체에 이양하기 위한 사무이양계획을 개편추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타.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안 제40조)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자치경찰제를 실시하도록 하며,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의 실시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4조제6호 및 제36조제3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경상남도 창원시에 한하여 시범 실시한다.

②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399호, 2010.12. 7,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현행 법률은 단순히 수탁·위탁 거래만을 전제하여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다자간 거래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는 기술자료 임치제도의 현실을 반영하여 수탁·위탁관계가 아닌 경우에도 임치할 수 있도록 하고, 단독 또는 다수의 기업이 동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와 안정적인 사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또한, 최근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market, SSM)에 사업조정제도가 적용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가맹점포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을 위해 도입된 사업조정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대기업이 운영하는 체인점포를 사업조정제도의 대상에 포함시켜 골목상권을 비롯한 소상공인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자료 임치제도 보완(안 제24조의2제1항, 안 제24조의2제3항 신설)

기술재산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탁·위탁 거래기업 외의 기업도 단독 또는 공동으로 기술자료를 수치인에게 임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임치물의 교부 시 수치인이 기술자료 교부조건 부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나. 기술자료 등록사항과 임치의 법적 효과 명확화(안 제24조의3 신설)
기술자료의 등록사항을 명확히 하고, 등록된 임치기업의 기술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사항에 따라 임치기업이 기술자료를 개발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함.
- 다. 기술자료 관리업무 종사자의 비밀유지의무(안 제24조의4 신설)
기술자료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할 수 없도록 함.
- 라. 임치제도 이용에 대한 수수료 징수(안 제24조의5 신설)
수치인의 임치업무에 관한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수수료 종류·금액 등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도록 함.
- 마. 사업조정 대상에 대기업 체인점포 추가(안 제32조제1항)
대기업이 운영하는 체인점포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바. 비밀유지의무 위반 및 위법사용 벌칙 마련(안 제41조)
부정한 방법으로 임치제도를 사용하는 자 및 기술자료 임치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10398호, 2010.11.24,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산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설등록 대상의 확대(안 제2조 및 제8조제1항)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등 준대규모점포를 전통산업보존구역에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나. 전통산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 안 제13조의3 신설)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전통산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안에서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

다. 준대규모점포의 등록규정 등의 유효기간(안 부칙 제2조)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전통산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 터 3년간 효력을 갖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499호, 2010.11.19,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개정(법률 제10316호, 2010. 5. 25. 공포, 11. 26. 시행)됨에 따라, 친환경건축물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경감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친환경건축물의 환경개선부담금 경감(안 제7조제4항 신설)

친환경건축물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경감하되, 구체적인 개선부담금 경감 기준은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급별로 차등화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나.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 시 이자 납부 폐지(현행 제8조의2 제6항 삭제)

1) 환경개선부담금의 분할납부는 납부 의무자가 부과금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납부 의무자의 부담

을 완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나, 분할납부 시 연 8퍼센트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금액을 합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음.

2) 환경개선부담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분할납부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국민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됨.

다. 추가 징수 비용의 지급 기준 변경(안 제11조제2항)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이 높은 시·도지사에게 징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종전에는 시·도별 평균 징수율을 기준으로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시·군·구별로 징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추가 징수 비용을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520호, 2010.12. 9,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단체들도 사회적기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개정(법률 제10360호, 2010. 6. 8. 공포, 12. 9. 시행)됨에 따라, 시·도지사는 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

획과 연도별 지원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으려는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하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약계층의 범위 확대(안 제2조)

- 1) 법률에서 취약계층의 정의에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도 포함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2) 안제2조)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으로서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 피해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 대상자 등을 추가함.
- 3) 사회적기업을 통하여 노동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취약계층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사회통합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사회서비스의 범위에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 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직업안정법」에 따른 고용 서비스를 추가하여 사회서비스의 종류를 확대함(안 제3조).

다. 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7조의2 신설)

- 1) 법률에서 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시·도지사는 5년마다 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전년도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 추진계획을 작성하도록 하며, 이를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시·도의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지역사회 공헌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함(안 제9조제1항제3호 신설).

1) 법률에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단체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에는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그 판단기준으로 함.

마. 법률에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두도록 하면서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임원에 관한 사항, 이사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사항, 회계 및 설립등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7까지 신설).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료출처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1.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4
2.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	——	25
3.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	——	29
4. 광주광역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안	——	36
5. 전라북도 치매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42
6.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	47
7.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53
8. 제주특별자치도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	62
9.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안	——	64

최근 타시·도 제·개정 조례

1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17
------	-----

발 의 년 월 일 : 2010. 10. 5.
발 의 자 :
김종욱, 백금산, 김형태, 공석호, 김광수,
김기만, 김명신, 김미경, 서윤기, 오승록,
윤명화, 이명영, 정상천, 최보선의원의외 72명

1. 제안이유

「학교급식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친환경 무상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등 급식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영유아와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을 학교 등 교육기관 또는 시설의 식재료에 우선 사용하여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수급체계 완성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7월말까지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우선 반영함(안 제3조)
- 나.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대상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보육

- 시설 등으로 하며, 의무교육기관은 우선적으로 지원함(안 제4조)
- 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급식경비를 교육감 및 구청장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하는 등 지원 및 신청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 라. 교육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지원금 사용내역을 지역 교육청을 거쳐 교육감에게, 보육시설의 장은 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하고, 급식지원과 관련한 각종 조사 및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도록 함(안 제7조)
- 마. 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며 필요시 급식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바. 급식경비 및 급식 지원 대상, 지원 방법, 지원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와 필요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제11조)
- 사. 급식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지도·감독하고,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함(제12조)
- 아. 의무교육기관에 대한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초등학교는 2011년 내에, 중학교는 2012년 내에 시행함(부칙 제3조)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친환경 무상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등 급식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영유아와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을 학교 등 교육기관 또는 시설의 급식 식재료에 우선 사용하여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수급체계 완성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무상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의 지원 대상에게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무상 급식”이란 급식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3. “학교급식프로그램”이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식생활교육과 농촌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하는 학교급식과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4. “급식경비”란 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 설비비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말한다.

5. “식품비”란 급식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식재료와 그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6. “친환경농산물수급체계”란 농업인들과의 사전계약 등의 방식으로 재배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유기농축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저농약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품의 수급체계를 말한다.
7.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고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안전한 농·수·축산물과 이 원료로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이력추적이 가능하여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친환경농산물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농·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품
 -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산물
 - 다.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농산물
 - 라.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로써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과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 마.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품질 인증을 받은 수산물
 - 바.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식품
 - 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증한 우수 농특산물
8. “급식지원센터”란 급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 지원 예산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을 지도·감독하고 급식정책과 교육

을 총괄하며, 급식에 공급되는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효율적으로 생산·공급·관리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학교급식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9조에 따른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학교급식 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친환경무상급식의 전면 시행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2.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수급체계 구축 및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3. 건강한 식생활 실현을 위한 학교급식 프로그램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4. 급식지원센터 설비 확충 개선과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5. 급식지원센터 운영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안전하고 질 좋은 농·수·축산물 생산지역의 선정 및 공개에 관한 사항
 7. 급식체험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소요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8. 직영급식 학교에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
 9. 방학 및 휴일 중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10. 전년도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무상급식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7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하고,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즉시 서울

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① 친환경무상급식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등 교육기관 또는 시설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4. 그 밖에 시장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② 제1항의 급식지원 대상 가운데 의무교육기관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5조(지원 방법) 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급식경비를 교육감 및 서울특별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치원과 초·중등학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원하고, 보육시설은 직접 또는 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할 수도 있다.

③ 시장은 “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식재료 지원품목과 식재료 총 소요량에 따른 생산계획에 의하여 계약생산으로 하고,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해 비영리 법인 등 민간기구와의 계약에 의하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2.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학교급식을 위한 계약재배 생산자에게 가격보전 및 인센티브제공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3. 계약재배는 친환경농산물수급체계에 참여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를 우선한다.
 4. 약재배 및 공동조달의 우선순위는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순으로 하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품질을 인정하는 농산물과 국내산 농산물 순으로 조달 공급한다.
 5. 가공식품은 지역의 친환경농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품(유기가공식품포함), 우리농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품으로 조달 공급한다.
 6. 제1호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는 지원업무를 대행하는 지정공급자로서 시장의 지도·감독과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제2조에 의거 급식경비 및 식재료의 품목 결정, 지원 범위, 지원 금액 산정, 급식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 신청) ① 시장에게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 등 교육기관 및 시설의 장은 급식경비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학교의 장은 지역교육청을 거쳐 교육감에게, 보육시설의 장은 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이를 종합하여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 시기, 절차, 서식, 공고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와 유치원 및 보육시설(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은 지원금 교부 결정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지역교육청을 거쳐 교육감에게, 보육시설의 장은 구청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또는 구청장은 지원금의 집행결과를 매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원 대상 학교 등은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각종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원 대상 학교 등은 시장을 비롯한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요구하는 조사 사업 등 급식 관련 제반사항에 대해 최대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조(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급식에 사용될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감독하며, 친환경무상급식 사업의 정책, 교육, 홍보 등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급식지원센터는 공공성과 공익적 기능을 가지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매년 정기적인 급식 실태조사
2. 생산자 및 학교에 대한 지원 및 범위선정
3. 생산지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따른 생산계획 조정 및 품목선정
4. 유통 및 공급 관리

5. 관할 교육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6.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관할 교육청, 지원 대상 시설의 급식 운영위원회 간 급식업무 협의
7. 기타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부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전처리, 포장 등 1차 가공시설
2. 친환경 농산물 가공공장
3. 물류창고 및 차량기지
4. 생산 단지 조성 및 급식체험프로그램을 위한 종합교육시설
5. 식재료 생산 또는 급식지원 연구 및 컨설팅을 위한 연구소

④ 단체장은 필요시 급식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 기구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제9조(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 신청에 따른 급식경비 및 급식 지원 대상, 지원 방법,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 내에 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생산지 선정, 지방자치단체협약 및 급식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9인 내외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부시장 및 관련 담당국장

2. 교육청 업무관련 담당국장
 3. 서울시의회의장 추천 서울시의원 3명
 4. 구청장협의회 추천인 1명
 5. 영양사회 및 조리사회 추천인 1명
 6. 학부모단체 추천인(초·중·고 각 1명)
 7. 교육청 추천 교장 및 교사 각 1명
 8. 환경농업생산자 단체 추천인 1명
 9. 급식관련 시민단체 추천인 1명
 10. 급식 관련 전문가 1명
 11. 학교급식지원 센터 센터장
 1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 1인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급식관련 해당 부서장으로 한다.
 - ⑤ 당연직 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해당 단체가 추천한 자로서 시장이 위촉 한다.
 -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친환경급식지원 대상학교와 지원 규모 및 식재료 품목에 관한 사항
2. 무상급식대상 및 지원규모와 내역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의 품질 및 영양 개선 및 학생 식생활 습관의 교

정을 위한 다양한 시범 사업에 관한 사항

4. 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급식체험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기타 시장이 요구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 1/3 이상의 회의 개최 요구 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1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총괄한다.

③ 소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 중에서 이해관계인은 소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2조(지도 감독 등) ① 시장 및 교육감은 지원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장 등이 제7조의 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결정 집행된 급식지원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② 의무교육기관에 대한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초등학교는 2011년

2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44
------	----

제출연월일 : 2010. 9.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장
(환경보전과장)

1. 제안이유

- 가. 시정장애와 호흡기질환 등을 유발하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의 예보 및 경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 나. 병원·학교·노인정과 미세먼지 배출업소·공사장 등에 시민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예보 및 경보에 따라 대기오염 저감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권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의 방법 등을 정함(안 제3조)

나.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의 내용과 그 기준을 정함(안 제4조)

다.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따른 조치사항 규정(안 제5조)

- 1) 부산광역시교육감에게 야외수업 자제·금지, 수업단축, 휴교 등의 조치 권고
- 2) 불필요한 차량의 운행 자제·금지 권고, 미세먼지의 위해성 등을 보도기관을 통한 전파
- 3) 병원·학교·노인정과 미세먼지 배출업소·공사장 등에 시민행동요령 준수 권고

부산광역시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미세먼지의 예보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세먼지”란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μm) 이하의 먼지를 말한다.
2. “예보”란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 관측된 기상자료 및 기상예

보 자료 등을 고려하여 예측된 농도지수를 사전에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3. “경보”란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된 시간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 이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4. “미세먼지 농도”란 부산 지역의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측정 한 권역별 전체 측정소의 시간평균 농도를 말한다.

제3조(예보 및 경보 방법)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의 내용을 보도기관과 유관기관에 알려야 한다. 다만, 미세먼지 예보의 경우 별표 1의 “나쁨” 이상일 경우에 한정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농도를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공개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예보 및 경보의 대상지역은 동부(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기장군)와 서부(북구,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 2개 발령권역으로 한다.

제4조(예보 및 경보의 내용과 기준)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의 내용과 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5조(예보 및 경보에 따른 조치) 시장이 “나쁨” 이상의 예보와 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유치원생·학생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야외수업 자제·금지, 수업 단축, 휴교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부산광역시교육감에게 권고
2. 불필요한 차량의 운행 자제·금지 권고, 미세먼지의 위해성

등을 보도기관을 통하여 전파

3. 병원·학교·노인정과 미세먼지 배출업소·공사장 등을 운영하는 사람 등에게 별표 3의 경보에 따른 시민행동요령을 준수하도록 권고

제6조(대기오염 개선 노력) ①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은 예보 및 경보가 발령되면 긴급한 경우 외에는 차량 운행을 자제하여 미세먼지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미세먼지 배출업소·공사장 등을 운영하는 사람은 사업장의 환경개선, 조업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의 발령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46
------	----

제출연월일 : 2010. 9.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장
(비전전략담당관)

1. 제안이유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수립 등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도시브랜드의 중요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는 도시브랜드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활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우리 시의 대내외적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선진화된 도시이미지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등 수립·추진(안 제4조 및 제5조)

-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5년마다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나. 시 브랜드 슬로건의 관리·사용(안 제6조)

- 시 브랜드 슬로건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어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시의 발전 및 홍보를 위한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다. 도시브랜드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7조부터 제17조까지)

-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도시브랜드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도시브랜드 정책·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도록 하고, 분과위원회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정보제공 및 여론조사(안 제19조)

- 도시브랜드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와 시민 참여의 확산을 위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부산광역시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대내외적인 도시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브랜드”란 도시의 경제, 문화, 환경, 시민, 인프라, 여가 생활 등 도시의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한다.
2. “브랜드 슬로건”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체성과 미래상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슬로건을 말하며, 별표와 같다.

제3조(시의 책무) ① 시는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는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활동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브랜드 기본계획)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브랜드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2. 도시브랜드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전략
3. 연차별 중점 추진과제와 세부사업
4.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이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4조의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에 포함된 도시브랜드과제에 대하여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브랜드 슬로건 관리 및 사용) ① 시장은 시의 브랜드 슬로건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브랜드 슬로건은 시의 발전 및 홍보를 위한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브랜드 슬로건을 사용하는 때에는 「상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7조(도시브랜드위원회의 설치) 시의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도시브랜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주요 도시브랜드 정책 및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도시브랜드과제의 이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도시브랜드 관련 시민 의견수렴 및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도시브랜드 관련 국내외 홍보 및 민·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시브랜드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시의 도시브랜드 업무 관련 3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도시브랜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브랜드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지식경제 분과위원회
2. 문화·관광 분과위원회
3. 국제협력 분과위원회
4. 글로벌시민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된 안건을 심의 또는 자문하며,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④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⑤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해서는 위원회의 운영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합동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가 참여하는 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합동회의의 의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5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재정지원) 시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국내외 홍보, 도시브랜드과제 육성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정보제공 및 여론조사) ① 시장은 도시브랜드에 관한 지식·정보 및 사업의 추진사항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4] 광주광역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0년 11월 일

제 출 자 : 광 주 광 역 시 장

1. 제안이유

날로 변화되고 있는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유통산업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건전하고 편리한 소비생활 환경을 제공하며, 대·중소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과 구청장 책무 규정(안 제3조, 제4조)

-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통해서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

나. 대규모점포 등의 사업계획서 등 제출(안 제5조)

- 대규모점포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점포개설공사 30일 전까지 사업개설계획서를 제출하며
- 시장과 구청장은 사업개설 적정성 여부를 14일 이내 통보

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안 제6조)

- 구청장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 범위에서 지정
- 시장은 범위지정 및 지정취소를 요청할 수 있음.

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제한(안 제7조)

- 전통상업보존구역내 : 500m² 이상 불가
대기업유통사업자의 500m² 미만은 전통시장 상인회 동의
 - 주거지역, 녹지지역내 :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심의회 심의
- 다.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심의(안 제8조)
- 시, 구에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설치
 - 상권영향평가(등록심의회에서 신청자에게 제출하게 함)
 - 전통상업보존구역내의 전통시장상인회·전통시장상인연합회, 광주슈퍼마켓협동조합의 사업개시 동의서 제출 여부를 심의시 확인
- 바. 분쟁조정 신청(안 제10조)
-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과 관련된 분쟁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

광주광역시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과 사업개설 조정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유통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2. “준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를 말한다.

- 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직영하는 점포
 -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 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2에 정한 체인사업(직영점형 체인사업과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에 한한다)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3. “일반준대규점포”란 매장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의 점포로 제5호 대기업유통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점포를 말한다.
 4. “대규모점포 등”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일반준대규모 점포를 말한다.
 5. “대기업유통사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는 대기업과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통해서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치구의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사업조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시장의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과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5조(대규모점포 등의 사업개설계획서 제출 등) ① 대규모점포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장소, 개설시기, 점포규모, 사업자 등을 작성한 사업개설계획서를 건축허가 신청 또는 점포 개설공사 30일 전에 대규모점포는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준대규모점포와 일반준대규모점포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개설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 개설의 적정성 여부 등을 14일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시장은 구청장에게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지정 및 지정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지정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①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서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할 수 없으며 대기업유통사업자의 500제곱미터 미만의 점포는 전통시장상인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주거지역, 녹지지역내에서 대규모 점포등을 개설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심의) ① 시장과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위원회에서는 대규모점포 등 개설 등록신청에 따른 구비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개설하고자 하는 점포의 건축허가의 유무,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대지·건축의 소유권·사용권의 사실여부
2. 개설 하고자 하는 주변 지역의 상권에 미치는 영향평가(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신청자로 하여금 전문기관의 상권영향평가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해당 전통상업보존구역내의 전통시장상인회와 광주광역시 전통시장상인연합회, 광주광역시슈퍼마켓협동조합의 사업개시 동의서

③ 심의위원회는 지역여건, 주거환경 적합성, 주변시설 및 구조안전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상권영향분석, 주거환경영향분석, 구조안전진단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등록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수당 등) 심의회 위원과 심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분쟁조정)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과 관련된 분쟁조정을 원하는 자는 대규모점포는 관할 자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준대규모

점포와 일반준대규모점포는 광주광역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치구 등에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 등) ① 시장과 구청장은 지역유통산업균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과 구청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반행위 신고포상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신고 대상과 지급액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 및 대기업 유통사업자 등록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 전라북도 치매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0. 11.

제 출 자 : 전라북도지사

제안설명자 : 복지여성보건국장

1. 제안이유

「노인복지법」 제29조에 따라 치매예방에서부터 조기발견 및 치료 등 치매관리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치매관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치매관리센터의 명칭 및 위치(안 제2조)
- 나. 치매관리센터의 업무(안 제3조)
- 다. 치매관리센터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수탁자 선정,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 마. 치매관리센터의 자문위원회 설치, 구성, 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 바. 조사 또는 검사, 위탁의 취소,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전라북도 조례 호

전라북도 치매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9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

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치매관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전라북도 치매관리센터”(이하 “치매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위치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제3조(업무) 치매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업무
2. 치매 조기검진에 관한 업무
3. 치매 환자 발견·등록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현황 구축에 관한 업무
4. 치매 관련 재활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업무
5. 치매 관련 자원실태, 주민요구도 등 지역조사에 관한 업무
6. 치매관련 지역사회자원 인프라 강화에 관한 업무
7. 그 밖의 도지사가 정하는 노인보건에 관한 업무

제4조(운영의 위탁)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치매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는 치매관련 전문 의료기관, 보건의료 관련기관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는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무를 위탁하는 기관 및 수탁 받는 기관 또는 단체
2.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3.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

4. 위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5. 그 밖의 사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탁연장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치매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사업실적 등

④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전라북도 치매센터 위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운영은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다.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수탁받은 치매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치매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치매노인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치매센터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3.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3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업

무에 사용하여야 한다.

4.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자문위원회 설치) ① 치매센터의 사업수행에 대한 조정·평가·자문 및 치매환자 등에 대한 지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북도 치매관리센터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센터 운영에 관한 조정·평가
2. 치매센터 사업 수행에 대한 자문과 지원
3.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 등

③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자문위원회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치매업무 주관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보건위생과장, 치매센터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치매관련 전문가, 치매가족 대표, 치매 분야의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9조(자문위원회 임기) ① 자문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해촉) 자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때
2.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때
3. 사망, 질병

제11조(조사 또는 검사 등) ① 도지사는 치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에 대하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의 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6조를 위반한 경우
2. 조사 또는 검사 등을 통하여 수탁기관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조사 또는 검사 등을 통하여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사업과 관련하여 자비로 구입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으로 본다. 다만, 사전 협의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운영비 지원)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계약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및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④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61
----------	----

발의년월일 : 2010. 9.

발 의 자 : 유창희의원, 유기태의원외 24인

1. 제안이유

전라북도교육청과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간 교육·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설치·운영함. (안 제3조)
- 나. 기금은 전라북도 교육청이 추진하는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과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그리고 그 밖에 남북교육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활동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다. 기금의 운용·관리와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함.(안 제7조)
- 라.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에서는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과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남북교육교류협력 기반 조성 및 민간 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남북교육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정책 협의 및 자문 그리고 기타 남북교육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함.(안 제8조)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교육청과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간 교육·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이라 함은 전라북도 교육청 이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의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상호 이해 및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행하는 각종 교육·학예에 관한 교류와 협력을 의미한다.

제2장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제3조(기금구성) ①전라북도교육청은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②기금의 재원은 전라북도교육청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전라북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 그 밖에 남북교육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활동의 지원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심의) ①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

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②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전라북도교육청 남북 교육교류협력위원회가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3. 기금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기금을 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④교육감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당해 기금을 고유 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6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학교정책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인성·인권교육 담당 장학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제3장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제7조(위원회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와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

2.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남북교육교류협력 기반 조성 및 민간 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남북교육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정책 협의 및 자문
5. 기타 남북교육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임원으로 둔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남북교육교류협력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남북교육교류협력 분야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
3. 전라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관련 공무원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

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2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위원 1/3이상이 요구할 시 회의를 소집한다.

③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실무위원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의견청취 등) 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관계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라북도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위원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㉔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
----------	----

발의일자 : 2010년 8월 일
발 의 자 : 박진현·김수용의원의외 13명

1. 제안이유

경상북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입법정책연구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기존의 정책연구위원회와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을 정책연구위원회로 통합하여 일원화하고자 함.

또한 다양한 연구주제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 정책연구위원회와 연구단체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정책연구위원회의 기능에 위원회 소속 의원연구단체의 등록·운영에 관한 심의사항을 신설하여 의원의 연구활동을 정책연구위원회로 통합하여 일원화함. (안 제2조 및 부칙 제2조)
- 나. 위원회 위원에 각 연구단체의 대표가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를 포함시켜 각 연구단체가 연구주제에 대하여 심도있는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및 제14조 제3항)
- 다.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여 정책연구위원회 활동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소관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기간 종료시까지로 한정하여 연구

- 단체에서 보다 다양한 연구활동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4조)
- 라. 위원회 운영과 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과 관련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과 소속 연구단체의 자율적인 연구활동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20조)
- 마. 위원회에 의원이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연구단체를 등록하고 연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다양한 연구주제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 및 제13조)
- 바. 위원회는 각 연구단체의 연구활동결과 보다 전문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의장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회 의원이 도정발전과 관심있는 분야에 관하여 의원 입법 및 정책대안 개발 등의 입법정책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의 의정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원입법 및 정책대안개발을 위한 의안의 발굴·조사·연구
2. 도민의 입법청구에 관한 사항의 검토·자문
3. 위원회 소속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의 등록·운영 심의
4.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의정활동에 관한 연구과제 검토와 시행중인 정책의 연구·자문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각 상임위원회의 장이 추천한 경상북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각 2명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원 3명
3. 각 연구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외부전문가(이하 “외부전문가”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이내로 한다. 단, 외부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소관 연구단체의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기간 종료시까지로 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이 경우 회의는 회기를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의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할 때에는 연구단체의 대표를 참석시켜 연구활동에 관한 내용 등을 청취할 수 있다.

- ⑥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심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⑦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지원)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연구단체)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위원회에 의원이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연구단체를 둔다.
- ② 연구단체는 위원회 위원 2명 이상을 포함한 10명 내외로 구성하되 각 의원은 하나의 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다.
 - ③ 각 연구단체는 대표를 두어야 한다.

제10조(연구단체의 명칭) 각 연구단체는 연구의 취지에 적합한 단체명을 정하여야 한다.

- 제11조(연구단체의 등록) ①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 연도 10월 25일까지 등록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연구단체의 등록에 관하여 심의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연구단체의 대표는 소관 연구단체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등록취소) 위원장은 소속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원장의 승인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나 다음연도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연구단체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3조(연구활동계획서) ① 연구단체는 매 연도 10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연구활동계획서와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연구단체의 연구주제 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연구단체에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단체 운영) ① 연구단체는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자율적으로 연구활동을 수행한다.

② 연구단체는 목적 달성을 위해 토론회, 간담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연구단체 대표는 심도있는 연구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외부전문가 1명을 연구단체의 회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외부전문가는 연구주제와 관련된 교수와 연구원 등을 지역에 있는 대학교와 연구기관 등에서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외부전문가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단,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활동기간이 종료되면 자

동 해측된 것으로 본다.

- ⑥ 외부전문가는 해당 연구단체와 공동으로 연구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15조(연구계획의 변경) ①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활동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단체의 활동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제16조(연구기간) ① 연구활동기간은 연구활동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다음연도 9월말까지로 한다. 단, 위원회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르게 할 수 있다.

- ② 연구단체는 연구활동이 종료되면 매 연도 10월말까지는 연구활동결과를 발표하고 그 결과를 연구활동비의 사용내역과 함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연구단체는 사용하고 남은 연구활동비가 있으면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 ④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17조(채택된 의안의 제출) 위원회는 연구단체의 활동결과로서 채택된 의안은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연구용역) ① 위원회는 연구활동결과보고서의 심의결과에

따라 전문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의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건의된 연구주제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발주할 수 있다.

제19조(사무처리) ① 위원회의 운영과 그에 속한 연구단체의 등록·관리 등에 관한 총괄사무는 입법정책지원팀장이 담당한다.

- ② 각 연구단체의 세미나, 현지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연구활동은 각 연구단체의 대표가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이 담당한다.

제20조(연구활동비)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연구활동비는 연구에 필요한 비용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21조(지원범위) 연구활동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강사료·전문가 등의 자문경비와 자료발간비 등
2. 그 밖에 세미나·공청회·심포지엄·간담회·토론회 및 설문조사 비용 등의 필요경비

제22조(용도외 사용금지) ①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활동과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 ② 의장은 연구단체가 제1항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23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안건의 발굴이나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와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가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에는 토론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24조(수당 등) 위원회의 외부전문가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76
------	----

제출연월일 : 2010. 10. 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따른 사실 조사를 직접하기 곤란한 경우를 정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를 정함(안 제3조)

-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함으로써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행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

라 담배소매인지정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영업소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는 업무 일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실조사 의뢰) 규칙 제7조제3항의 사실조사를 직접하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함으로써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행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협약체결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의 지식경제국(경제정책과)의 번호란 19 다음에 번호란 2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지식경제국 (경제정책과)	20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 하기 위한 협약체결 등의 사무	「제주특별자치도 담배소매인 지 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74
------	----

제출연월일 : 2010. 10. 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재외도민회 구성 및 설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재외도민에 대한 위상을 제고시킴으로써 제주인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제주발전의 기초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재외도민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나. 재외도민회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다. 재외도민증 발급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 라. 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재외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역량강화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재외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이 향토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외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재외도민”이라 한다)이라 함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두고 있으면서 제주자치도를 제외한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재외도민회”라 함은 재외도민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친목단체를 말한다.

제3조(재외도민의 권리) 재외도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재외도민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 한 제주자치도의 재산과 공공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제주자치도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외도민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제주자치도의 위상을 선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상·재정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재외도민이 제주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재외도민의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재외도민회 구성) ① 재외도민회는 국내에서는 광역자치단체별, 국외에서는 국내 광역자치단체에 준하는 행정구역별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재외도민회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도민회는 예외로 한다.

② 지역도민회의 활성화 지원 및 재외도민들의 역량결집을 위하여 재외 제주특별자치도민회총연합회(이하 “재외도민총연합회”라 한다)를 두며, 구성원 및 운영은 재외도민총연합회 규약에 따른다.

제6조(재외도민회의 역할 및 책무) 재외도민회는 제주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제주발전을 위한 도정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4조제1항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원칙적으로 재외도민회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정시책 홍보
2. 고향방문 사업
3. 재외도민회간 교류 및 방문사업
4. 재외도민회 화합을 위한 문화행사
5. 재외도민 우수인력 관리를 위한 D/B 구축사업
6. 재외도민 우수인력 육성을 위한 장학금 기금 출연
7. 재외도민 애향심 고취를 위한 기념탑 설립 및 공원조성 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재외도민증 발급대상) 도지사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도민의 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증(이하 “재외도민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1. 국내외 각 지역 제주특별자치도민회의 재외도민증 발급 추천을 받은 사람
2. 도민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지역인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재외도민증 발급을 신청한 사람

제9조(재외도민증 발급절차) ① 재외도민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재외도민회나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② 재외도민증 발급신청을 받은 재외도민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외도민증 발급을 신청받은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재외도민증 발급대상에 적합한 경우 재외도민증을 발급한다.

제10조(재외도민증의 서식 등) ① 제9조에 따른 재외도민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② 도지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재외도민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재외도민증 발급 취소) 도지사는 재외도민증의 발급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에 따른 발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발급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도지사는 재외도민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게 관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관련 동향

1. 학교앞 교통법규위반, 범칙금 2배 !	——	70
2. “주택 재개발·재건축 너무 복잡하시죠?”	——	72
3. 2011년 국방예산 31.4조원	——	74
4. 한 눈에 보는 나의 세금정보, 『My NTS』 !	——	76
5. 동절기 중 모든 무료급식단체에 정부쌀 할인(85%) 지원	——	80
6. 과외교습 대상 해당 여부 관련 법령해석	——	81
7. 2차원 바코드, 스마트폰으로 날개달아...	——	82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 관련 동향

1 학교앞 교통법규위반, 범칙금 2배 !

-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범칙금 및 과태료를 2배 수준으로 가중 부과하는 내용으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월 30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운전자가 신호위반, 과속운행,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불법 주·정차 등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이 되는 법규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부과한다.

<법규위반 행위별 범칙금 상향 예시 (승용자동차 기준)>

	적용 대상	범칙금		
		현행	개정(안)	
예시 (승용차 기준)	속도위반	40km/h 초과	9만원	12만원
		20~ 40km/h 미만	6만원	9만원
		20km/h 이하	3만원	6만원
	신호·지시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6만원	12만원
	통행금지·제한위반/ 불법 주·정차		4만원	8만원

- 이번 개정안은 그간 정부와 지자체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교통표지판 및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확충해 오고 있으나,

○ 운전자들이 과속·신호위반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는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 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부터 더 이상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 2005년/2009년 대비 : 교통사고 349건→378건, 부상자 378명→560명

□ 이와 더불어 행정안전부는 전국 177개 특수학교 주변지역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 시설물 설치·정비 실태를 점검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완벽한 정비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범칙금 인상과 관련하여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 “신호위반·과속·불법주정차 등 운전자의 범규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92.7%에 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 정부의 조치는 매우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단속이 강화되어야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말했다.

□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라는 생각으로 모든 국민들께서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는 절대 교통법규 위반을 하지 않는다는 각오로 참여해 주어야 효과가 나타난다”면서

“모든 국민들이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의 법규준수에 다같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② “주택 재개발·재건축 너무 복잡하시죠?”

이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12. 6.(월)부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http://oneclick.law.go.kr>) 국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신규 3개 분야 법령정보(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보증)를 추가로 제공한다.

최근 전세가격 및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라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은 추진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법규정만 보아서도 그 구체적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다.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계획 수립, 시행 및 완료에 이르기까지의 각 추진절차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놓았다. 특히, 각종 평가, 토지 등 수용, 이주대책, 주택분양, 부담금 등 국민들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내용을 자세히 기술하였다.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외에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이 겪게 되는 보증과 관련하여, 보증 시의 유의사항, 보증인의 책임 범위, 보증인 보호방법 및 보증보험제도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사인(私人)간의 보증 뿐 아니라, 어음 보증 및 신용보증 제도 등 보증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 보증과 관련한 법률적 궁금증을 한번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콘텐츠 내용 예시>

(질문) 주택재개발구역에서 영업을 하던 사람들은 어떤 보상을 받나요? 주택재개발구역의 세입자는 어떤 보상을 받나요?

(답변)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사람에게 최대 4개월간의 영업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질문) 우리 동네 주택재건축을 시장이 L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진행하려 합니다. 원래 주택재건축은 조합이 시행하는 것 아닌가요?

(답변) 주택재건축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들로 구성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함이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등의 일정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시장·군수 등 공공에 의해 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질문) 동생의 빚보증을 서줬는데, 동생이 빚을 갚지 못하자 얼마 전부터 채권자가 밤낮 없이 빚 독촉 전화를 하고 수시로 직장에까지 찾아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보증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를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이와 같은 행위를 반복할 경우 형사소송을 통해 대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이로서 법제처는 165개의 다양한 생활분야에 대한 알기 쉬운 법률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법제처 조정찬 법령정보 정책관은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법률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더욱 내실화·다양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③ 2011년 국방예산 31.4조원

- 2011년 국방예산은 금년보다 6.2% 증가한 31조 4,031억원으로 확정되었음.
 - 국방부 소관의 경상운영비(병력운영비 + 전력유지비)는 6.1% 증가한 21조 7,096억원이며,
 - 방위사업청 소관의 방위력개선비는 6.5% 증가한 9조 6,935억원임.
- 내년도 해외파병(UAE, 청해, 동명, 단비부대) 예산 875억원은 국방예산과 별도로 '11년 목적예비비로 반영되었고, 백령도·연평도 등 서북도서 전력 보강 사업 중 금년도 조기 집행이 필요한 소요 492억원은 '10년 예비비로 반영·추진할 계획임.
 - 내년도 정부예산 증가율이 약 5% 수준임을 고려할 때, 국방예산에 중점 배정한 것을 잘 알 수 있음.

【 2011년도 국방예산 규모 】

(억원)

구 분		'10 예산	'11 정부안	전년 대비	국회 증액	'11 예산	전년 대비
일반회계	계	29조 5,627	31조 2,795	5.8	1,236	31조 4,031	6.2
	- 경상운영비	20조 4,597	21조 6,182	5.7	914	21조 7,096	6.1
	- 방위력개선비	9조 1,030	9조 6,613	6.1	322	9조 6,935	6.5
특별회계		1조 488	1조 2,669	20.8	183	1조 2,852	22.5
기 금		3조 36	3조 3,275	10.8	-	3조 3,275	10.8

* 해외파병 예산 875억원은 정부 예비비로 별도 편성

□ 2011년 국방예산의 특징은 국회심의 과정에서 발행한 연평도 포격 도발사건으로 서북도서 전력보강 사업을 위하여 2,613억원이 반영되었다는 점임('10년 예비비 492억원 포함시 3,105억원).

- (방위력개선사업 : 1,680억원) 대포병탐지레이더, 음향표적탐지장비, 주야관측장비, 자주포, 정밀타격유도무기, 진지보강 등
- (경상운영비 : 933억원) 피해복구비, 백령도·천평도 증편부대 병영생활관, 탄약고 정비고 신축 및 보강, 진지·대피소 유개화 및 방호벽 보강, 안전 장비·물자 확충 등

□ 한편,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방위력개선비 : 2,751억원
서북도서 긴급전력 보강(1,680억), 긴요 전투예비탄약 추가확보(288억), F-15K 2차 사업 추가반영(600억) 등
- 경상운영비 : 954억원
서북도서 긴급전력 보강(933억), 전투기 조종사 수당인상(2억) 등

□ 국방부는 내년도 예산이 정기국회 회기 내에 국회를 통과 확정된 만큼, 연말까지 사전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여 2011년 회계연도 개시부터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예정임.

0 한 눈에 보는 나의 세금정보, 『My NTS』 !

□ 국세청은 그동안 여러 웹사이트에서 일부분씩 제공하던 나의 세금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볼 수 있도록 My NTS(1인1세무계정)를 만들고 11월 10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함.

○ 이제는 『My NTS』에만 접속하면 나의 세금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고, 추가로 원하는 상세정보 또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됨.

□ My NTS는 이용도가 높은 51종의 세금정보를 납세자 유형별로 하나의 화면에서 보여주는 서비스임.

○ 납세자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비사업자로 구분하여 맞춤형으로 세금정보를 제공하며, 언제든지 다른 웹사이트와 연계할 수 있는 인터넷서비스의 허브 역할을 하는 곳임.

○ 이번 서비스로 그동안 납세자가 자신의 세금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웹사이트를 각각 접속하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납세자가 원하는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 My NTS는 납세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그동안 인터넷으로 서비스 하던 9개 시스템의 정보는 물론 국세청 내부에서만 활용하던 3개 시스템의 정보까지 추가로 제공함.
- 기본적인 정보로는 신고·납부내역과 체납·환급내역,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내역, 근로장려금, 법령정보 등이 대표적임.
- *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는 시스템(9종) : 국세청홈페이지, 홈택스, 현금영수증, 연말정산간소화, 전자세금계산서(e세로), 근로장려세제, 고객만족센터, 국세법령정보, 우편물센터(우편물 발송내역)
- * 국세청 내부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3종) : e-민원관리(민원처리 상태), 국세통합시스템(세무조사 이력), 세법해석판리
- 특히, 세무조사 이력, 우편물 발송내역 안내, 서면질의 및 세법해석 사전답변 진행상황 등은 납세자의 정보제공 요청을 반영하여 인터넷으로는 처음 서비스하게 됨.
- 납세자는 그동안의 세무조사 이력을 참고할 수 있고, 신고안내문과 고지서 등을 분실한 경우 세무서 방문 없이 My NTS에서 다시 인쇄하여 활용할 수 있어 편리함.
- * 우편물 발송내역 안내는 11월 20일부터 서비스 예정

- 세법해석과 관련된 사전답변을 신청한 경우 담당자와 처리 과정을 언제든지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음.
-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을 이용하여 신청한 사업자등록 관련 민원의 경우도 처리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함.

납세자 유형별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과거 신고내역은 물론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및 전자세금계산서 거래금액까지 My NIS 한 곳에서 확인한 후 간편하게 부가가치세신고를 할 수 있음.
 -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도 사업장현황과 신고내역 등이 한 번에 표시되어 여러 번 조회할 필요가 없음.
 - ※ 종전에 신고할 때는 4개의 사이트(홈택스, 현금영수증, e세로, 홈페이지)에 각각 접속하여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음.
-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도 개인사업자와 유사하게 이용하여 원천세와 법인세신고에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점에서 모든 지점의 세금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 본점에서 지점의 현황, 신고·납부·체납내역, 세무조사 이력 등 모든 것을 알 수 있어 지점 관리에도 유용함.
- 근로자 등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이용금액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고, 연말정산 기초자료인 의료비·교육

비·신용카드 이용금액 등 소득공제자료(10종) 및 근로자 등이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도 활용할 수 있음.

- 많은 납세자가 궁금해 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각종 지급명세서 내용, 근로장려금 신청과 결정 내용까지 확인이 가능함.
- 또한,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확인,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자동계산 기능을 이용하여 내야할 세금을 미리 알아보는 것도 한 곳에서 가능함.

시각장애인 등 누구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My NTS는 시각장애인 등 소외계층과 다양한 접속환경을 가진 인터넷 사용자들이 제한 없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제규격과 최근 기술을 적용하여 서비스함.
-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많이 사용하는 웹브라우저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웹 표준화 및 접근성을 향상시킴.
-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마음대로 메뉴를 재구성하고, 정보의 위치 또는 색상도 바꿀 수 있으며, 'My NTS 바로가기' 기능을 제공하여 접속하기 편리함.
- 다만, My NTS는 납세자의 중요한 개인정보를 보여주기 때문에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야 하며, 한 번만 접속하면 다른 웹사이트에도 별도 로그인 없이 이용 가능함.

㉞ 동절기 중 모든 무료급식단체에 정부쌀 할인(85%) 지원

□ 농림수산물부(장관 유정복)는 결식아동, 결식노인, 노숙자 등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이들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는 모든 단체를 대상으로 동절기(12월 ~ 익년 2월) 중 정부쌀을 85% 할인된 가격에 공급한다.

* (정상가격) 38,650원/20kg ⇒ (할인가격) 6,250원/20kg

○ 이는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 그 동안에는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어떤 예산 지원도 받지 못하는 단체에 한정하여 연간 2천톤 수준의 정부쌀을 85% 할인하여 공급하여 왔으나, 이번 동절기에는 모든 무료급식단체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다.

○ 이번 조치로 약 3개월 동안 정부쌀을 할인하여 공급받는 대상이 42천명에서 248천명으로 늘어나고, 약 3천톤 수준의 정부쌀이 추가로 지원될 것으로 보이며,

○ 정부쌀 추가 지원에 따른 비용 50억원 전액이 국고에서 지원된다.

* (현행) 대상인원 42천명, 공급물량 1,657톤, 정부부담 27억원
→ (확대) 대상인원 248천명, 공급물량 4,762톤(기존+추가3,106), 정부부담 77억원

□ 농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 쌀 할인지원을 받고자 하는 무료 급식단체는 12월 8일 부터 관할 시·군·구에 신청을 하면 필요한 물량을 즉시 공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이와 관련하여 농식품부에서는 무료급식단체가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적극 홍보에 나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④ 과외교습 대상 해당 여부 관련 법령해석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지식·기능·예능을 교습하는 것은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2조제4호에서는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의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과외교습으로 보고 있는데,
 -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아를 대상으로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행위가 과외교습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학원법 제2조제4호의 문언상 초·중·고등학교 등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등을 위한 시험 준비생이

아닌 자에게 지식 등을 교습하는 행위는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않는데, 유아는 학교의 학생도 아니고 유아를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시험준비생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유아를 대상으로 지식 등을 교습하는 행위를 과외교습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해석하였다.

- 법제처는 또한, 학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교습소의 운영자는 학원법에 규정된 각종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각종 행정상 제재조치가 부과되는데, 유아에 대한 교습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유아를 과외교습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법적 안정성 및 그에 따른 국민의 신뢰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현행 학원법의 해석상 유아를 과외교습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⑩ 2차원 바코드, 스마트폰으로 날개달아...

- 2차원 바코드(대표사례 QR 코드) 특허출원 올해 들어 급증 -

최근 스마트폰의 폭발적인 보급으로 찍기만 하면 정보가 읽히는 2차원 바코드가 뜨고 있는 가운데, 관련 특허출원도 올해 들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원 바코드는 특정 정보(URL, 텍스트, 전화번호등)를 격자무늬 패턴으로 바꾸어 사각형 모양에 넣은 것으로,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으로 사진을 찍으면 해당 정보를 표시해주는 코드이다.

대표적인 2차원 바코드로는 일본에서 개발된 QR(Quick

Response) 코드와 미국에서 개발된 DataMatrix가 코드가 있으며, 이들 코드의 생성은 무상으로 공개된 특허기술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통3사가 90년대 중반 이후 카메라폰을 활용한 2차원 바코드 사업을 시작했지만, 열악한 무선인터넷 환경과 OS의 한계로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스마트폰 출시되고 무선인터넷 환경이 개선되면서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누구나 2차원 바코드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에 따르면, 2차원 바코드 관련 특허출원은 2000년 이전 총 출원 건이 31건에 불과하였고, 2008년과 2009년에도 각각 29건, 17건에 머물렀으나,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출원량이 급증하여 2010년(10월말 현재)에는 71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내·외국인 출원비율을 살펴보면, 내국인 출원이 323건(74%)로 외국인 출원 112건(26%)보다 월등히 앞서고 있고, 내국인 출원 중 삼성전자와 LG전자등 대기업의 출원이 75건(23%)인 반면, 개인 및 중소기업의 출원이 248건(77%)으로 나타나, 2차원 바코드를 이용한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주체는 매우 다양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술별 출원현황은 코딩 및 판독장치 관련기술 124건(29%), 결제·인증 기술 82건(19%), 물류·유통 기술 72건(17%) 순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관계자는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공개된 2차원 바코드 기술을 이용한 비즈니스는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며, 관련 특허출원도 당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주요 사용 예>

QR 코드 명함(QR 코드 인식 후 주소록에 바로 저장 가능하게 입력)



이름: 김종권
 회사: 특허청
 전화번호: 042-481-8584
 이메일: shekjk@kipo.go.kr
 주소: 대전시 서구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웹사이트: www.kipo.go.kr



국회의원 전병헌 의원 명함으로 활용

버스 시간표 정보 제공 서비스(QR 코드 인식하면 다음 버스 시간을 알림)



홍보용 게시판으로 이용



문화체육관광부 홍보를 위한 QR코드 사용, 모바일 홈페이지와 게시판으로 이동.

디자인 QR 코드로 홍보물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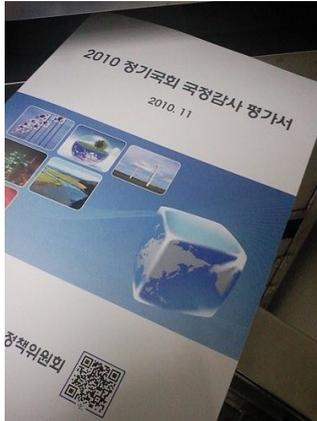
QR코드의 인식도 가능하고 홍보하기 위한 사이트의 URL를 저장하고 있어 QR코드를 인식하면 자동으로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



서울디자인 한마당
SEOUL DESIGN FAIR 2010

서울시가 '서울디자인한마당 2010'의 디자인 QR 코드를 제작하여 행사 홍보

도서정보 및 관련 사이트 QR 코드로 안내



“한나라당 정기국회 국정감사 평가서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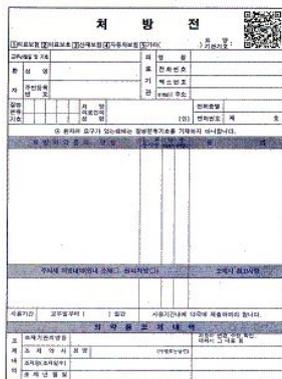
<http://www.hannara.or.kr>

신문기사 QR 코드로 안내



경향신문 기사로 링크되는 QR 코드

병원 처방전 내용 QR 코드로 확인



병원처방전의 오류 및 위조 방지를 위
한 QR 코드

<참고 1>

201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1 종이 없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종이 없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함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의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근로자가 전자파일로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임
 - 근로자가 제출한 전자파일의 영수증 금액이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자동 추출되므로,
 - 회사는 영수증 금액의 정확성 확인을 위한 수작업과 종이의 출력이 필요 없게 되어 납세협력비용 절감 가능
 - ※ 근로자는 소득공제신고서도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에서 전자 제출. 다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안경이나 교복구입비 등의 영수증은 종이문서로 제출
 - ‘종이 없는 연말정산’을 실시하고자 하는 회사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전자파일 인식(영수증 금액 추출) 프로그램을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과 연계되도록 설치해야 함
[프로그램 관련 전화상담 : (국번없이)126 → 내선기]
- 올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기부금 자료를 새로 제공
 - 국세청에 기부금 자료를 제출한 단체의 자료만 조회되므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 자료는 기부금단체를 통해 직접 수집하여야 함

- 국세청은 영수증 발급건수가 많은 1천개* 기부금단체에 '10.10 월 기부금자료 제출이 가능함을 안내 하였음

* 그 외 자료제출을 원하는 기부금단체는 '10.12.1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기부금 자료 제출 신청서'를 작성·제출[전화:(국번 없이)126 → 내선기]

2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

□ 주택 월세 소득공제 신설

- 서민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되었음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사글세 포함)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음 (연간 300만원 한도)
- 근로자는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월세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의 소득공제 추가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한 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됨('09년까지는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에만 인정)

- 다만,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반드시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함**

※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에는 위의 조건이 적용되지 않음

- 해당 근로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으며, 공제한도는 연간 300만원임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기부금 이월 공제가 근로자에게도 허용되어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됨

-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은 **법정기부금 1년, 특례기부금 2년, 지정기부금 5년**임

- 또한,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15% → 20%로 확대**되었음

- 다만,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내에서 기부금공제가 가능함

※ 원천징수의무자는 기부금공제를 받는 모든 근로자의 기부금명세서를 전산매체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함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축소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300만원으로 축소**되었음

- 공제문턱도 총급여액의 20% 초과금액에서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으로 높아짐

-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비율은 차별화 됨

- 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 공제비율은 25%로 높아졌으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의 공제비율은 20%로 종전과 동일

* 체크카드는 결제 시점을 기준으로 카드사에 후납하지 않는 대금에 한함

장기주택마련저축 기준 가입자 소득공제 폐지 유예

-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되어 올해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 다만, '09.12.31 이전 가입자(가입기한을 '10년 이후로 연장한 경우 포함)는 총급여 8,800만원 이하인 경우에 '12년까지 납입액의 40%를 공제 가능(300만원 한도)

미용·성형수술비 등 의료비 공제대상 제외

- 미용·성형수술비와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 포함) 구입비용은 치료목적과 무관한 비용인 점을 고려하여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 미용·성형수술 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2007년부터 2009년 귀속까지만 의료비공제를 허용하였음

과세표준 일부 구간 소득세율 인하

- 종합소득(근로소득) 과세표준 일부 구간의 세율이 인하되었음

과세표준	기본세율		비고
	'09년	'10년	
12백만원 이하	6%	6%	변동없음
46백만원 이하	16%	15%	1%p ↓
88백만원 이하	25%	24%	1%p ↓
88백만원 초과	35%	35%	변동없음

3**연말정산, 이것만은 주의하자!**

- 근로자는 연말정산에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 필요**
 - 국세청은 연말정산 **과다공제자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 **과다공제자로 밝혀지면 납부세액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소득공제 신청 전에 철저한 공제요건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공제대상 아님**
 -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또한, 근로자가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교육비** 등도 공제받을 수 없음

- **부양가족 중복공제**
 -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부양하는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가능
 - 부모님의 의료비·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 받은 근로자만 공제 가능
 - 맞벌이 부부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부부 중 한 사람만** 가능
 - 자녀의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 받은 사람만 공제 가능

□ 주택자금 과다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구입한 경우에만 가능
 -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 ※ 다만, '05년 이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무주택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공제 가능
- 주택과 차입금은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공동명의 포함)여야 하며,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 또는 차입금은 공제 불가능

□ 기부금 과다공제

- 허위 또는 실제 지출금액 보다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의 금액은 공제 불가능
- 배우자·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가능하나, 직계존속·형제자매가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불가능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는 공제요건 확인하고 사용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소득공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 근로자는 조회한 자료가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스스로 검토하고 공제신청 해야 함
 - 특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공제요건이 까다롭고 차입한 연도에 따라 공제요건도 다르므로* 본인 자료가 요건에 맞는지 꼼꼼한 검토가 필요함

* 새로 구입한 주택의 차입금에 대해 '05년 이전에는 기존 주택 보유자도 공제 가능했으나, '06년 이후부터는 무주택자만 공제 가능

4 자주 묻는 연말정산 사례

① 따로 사는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시부모 포함)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 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150만원) 가능합니다.

② 올해 12월에 결혼하는데,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하나요?

→ 소득공제 여부의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 상황에 의하므로, 12월 중에 혼인 신고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맞벌이 부부도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하나요?

→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④ 아버님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이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70세 이상)에 해당되면 장애인 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각각 적용합니다.

⑤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3명인 경우 다자녀추가공제 금액은?

→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1명일 때는 적용되지 않고, 2명일 때 50만원, 3명일 때 15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4명 이후에도 1명당 100만원씩 추가됩니다.

- ⑥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 받나요?**
- 그렇습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⑦ **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차남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두 사람 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⑧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나요?**
-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간병비는 의료기관에서 간병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료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⑨ **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처남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 근로자 본인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⑩ **장학금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그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부담금액만 교육비공제 대상입니다.
- ⑪ **자녀가 대학교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미리 납부한 입학금을 올해에 공제할 수 있나요?**
- 올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 입학 전까지는 대학생이 아니므로 올해 납부한 금액은 대학생이 된 내년에 교육비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⑫ **초등학생인 아들의 보습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공제받을 수 있나요?**

→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만 교육비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생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⑬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근로자 본인이 공제가능 하나요?**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자녀의 기부금액은 기부금공제에 포함할 수 있으나, 부모님 명의 기부금액은 기부금공제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⑭ **특별재난구역에서 20시간 자원봉사를 한 경우 기부금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특별재난구역 복구를 위하여 20시간 자원봉사한 경우 15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봉사일수× 5만원(봉사일수=총봉사시간÷ 8, 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

⑮ **20세가 넘은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가 가능하나요?**

→ 만 20세가 초과된 자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⑯ **가족카드는 대금지급자와 카드사용자 중 누가 신용카드공제를 받나요?**

→ 카드사용자 기준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부인명의 가족카드 사용액을 남편이 결제하는 경우라도 해당 사용금액은 부인이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⑰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나요?

→ 신용카드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학원비를 지로로 납부한 금액도 신용카드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⑱ 올해 신설된 **월세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면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월세액 소득공제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⑲ **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요?

→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일 10만원까지는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어 납부세액 없음)

⑳ **중도퇴직자**는 언제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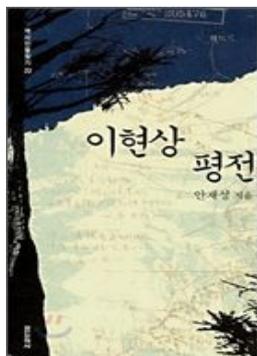
→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도 중 재취업을 하게 되면 현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소득을 합해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 ◀◀

인터넷	☎ 고객만족센터 http://call.nts.go.kr
	☎ 연말정산 멘투맨상담 www.yesone.go.kr/call (연말정산 실무자 전용)
전화	☎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126
	⇒ (내선 1번) 연말정산 세법상담
	⇒ (내선 2번) 현금영수증 상담
	⇒ (내선 4번) 홈택스 이용 상담
	⇒ (내선 5번) 전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내선 7번)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상담
	☎ 전국 세무서 ⇒ 연말정산 세법상담
방문	😊 전국 세무서
	국세청(www.nts.go.kr) » 국세청 소개 » 전국세무관서

<참고 2>

행복한 책 읽기



도서명 : 이현상 평전

저자명 : 안재성

출판사 : 실천문학사

출판년 : 2007년

페이지 : 606

가 격 : 15,000원

이현상은 을사조약이 체결되던 해인 1905년 전북(현재는 충남) 금산군 군북면 외부리에서 4남2녀 중 다섯째(4남)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전주이씨 양반가로 부친은 부농이었던 진사 이면배였다. 그는 중앙고보 재학 중이던 1925년부터 박헌영 등과 함께 공산당운동에 적극 가담하였으며, 1926년에는 6.10만세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927년 휴학 중 상하이로 건너가 망명 청년들의 모임 ‘한인청년회’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온 그는 동맹휴학을 주도하여 1928년 8월 구속되었다. 이를 시작으로 일제 식민치하에서 총 12년간의 감옥 생활을 했다. 해방 이후에는 조선공산당 재건에 적극 가담하며, 남로당 연락부장, 간부부장을 맡아 활동하였으나 미군정에 의해 공산당 활동이 불가능해지면서 박헌영 등과 함께 월북한다. 1948년 다시 서울로 내려온 그는 빨치산투쟁을 위해 그해 11월 지리산으로 들어간다.

이후 그는 ‘조선 인민유격대 남부군 사령관’으로서 지리산 등지에서 치열한 빨치산 투쟁을 전개하며, 수많은 전설을 만들어냈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 후 경상도, 제주도를 제외한 남한 전역에 인공이 수립되자 부대를 이끌고 지리산에서 하산하여 낙동강 전선 등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기도 하였으나 미군의 인천 상륙과 함께 다시 입산하여 빨치산 투쟁을 전개한다. 1951년 7월 그는 공식적으로 남한 빨치산 총사령관의 위치에 오른다. 그러나 1953년 북한에서는 한국전쟁의 휴전과 함께 남로당 계열이었던 박헌영, 이승엽 등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이 단행된다. 그해 8월 6일 지리산 빗점골에서 열린 제5지구당 조직위원회와 결정서 9호, 9월 6일의 결정서 10호에 따라 제5지구당은 해체되고 위원장이었던 이현상은 평당원으로 강등됨과 동시에 빨치산 지도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박탈당한다. 그리고 1953년 9월 17일, 지리산 빗점골에서 의문의 총탄에 맞아 숨진 시체로 발견되어 화개장터 앞의 섬진강변에서 화장되었다. 그의 나이 48세였다.

그는 평범한 키에 언제나 과묵하고 우수에 잠긴 듯한 모습이었다고 한다. 대원들을 아끼고 매사에 솔선수범하는 지도자였으며, 남부군뿐 아니라 빨치산 모든 대원들로부터 지극한 존경을 받았다.

오늘까지도 이현상은 극단적으로 상반된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한편에서는 일제시대부터 해방 후까지 삼십 년 세월을 민족의 독립과 계급해방을 위해 투쟁한 전설적인 영웅으로 떠받드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비현실적인 이념에 경도되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간 공산주의자로서 그 이름을 꺼내는 것조차 범죄시해왔다. 그러나 이현상은 한국 현대사의 격류를 건너갈 때 반드시 밀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전설적인 민중혁명가이다. 일제 치하에서는 모진 고문과 회유, 12년간의 옥살이에도 불구하고 단 한순간도 변절하지 않았으며 해방 후 더욱 가혹해진 탄압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았다. 어느 누구보다 민족의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을 꿈꾸었던 철저한 사회주의자이자 휴머니스트였던 그는 오직 민족의 독립과 자립을 위해 외세와의 투쟁에 모든 것을 바쳤던 진정한 애국자요, 영웅이었다.

지리산에서 고군분투하던 이현상의 모든 직위와 명예를 박탈했던 북한은 이현상이 한 줌의 재가 되어 섬진강에 뿌려지자 다시 영웅으로 복권시켰다. 북한은 그가 죽기 전인 1953년 2월 날짜로 이현상에게 영웅 칭호를 내렸으며 지리산으로 영웅훈장을 보냈다고 발표했다. 1968년에는 평양 신미동에 조성된 애국열사릉에 이현상의 묘지를 제1호로 만들었다. 시신 없는 가묘였다. 이후 북한이 제정한 제1호 열사증을 추서 받았으며 사망 삼십칠 년 만인 1990년 8월에는 다시 조국통일상을 받았다.

60여 컷의 화보 속에는 1990년대 중반, 최초로 공개된 이현상의 직계가족들 사진도 수록하였다. 북한의 대표적인 월간지 중 하나인 『금수강산』에 수록되었던 것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양 방문 시, 안내를 맡았던 이현상의 막내딸 이상진을 비롯한 후손들의 현재 모습을 담았다.

[자료출처 : 인터넷서점]

의 정 정 보

- ❖ 발행일 : 2010년 12월 10일
- ❖ 발행처 : 충청남도의회 법제자료담당관실
법제자료담당관 : 홍민표
법제자료담당 : 조남명
자 료 편 집 : 최성민, 신의식, 안가영,
박광일, 이종섭
-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nam.go.kr>
전화 (042)606-5029 / 팩스 (042)606-5029